

수의계약 사유서

1. 사업명 : 홈페이지 콘텐츠개선 및 유지보수(연간단가)

2. 사업내용

- 주민들의 홈페이지 이용편의성 증대 및 취약계층의 접근성 강화를 통한 안정적인 홈페이지 운영으로 주민들의 알권리 충족 및 참여행정을 구현하고자 함.

3. 소요예산 : 금115,000,000원(금일억일천오백만원)

4. 근거법령 :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

○ 제26조 (재공고입찰과 수의계약)

-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 담당자는 제19조제2항에 따라 재공고입찰을 할 때 입찰이 성립하지 아니하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수의 계약에 의할 수 있다.
- ② 제 1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경우 보증금과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과 그 밖의 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.

5. 수의계약사유

- 2015년 1월 19일부터 입찰 재공고 결과 입찰업체 부재로 유찰됨에 따라 「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6조」에 의거 수의계약을 체결하고자 함.

2015. 1. .

작성자 : 지방전산서기

이 성 우 (인)

확인자 : 홍보전산과장

권 용 대 (인)

성북구경리관(분임경리관) 귀하